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212호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기술 발달로 인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확산과 그 피해를
고려해,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하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한 삭제지원 대상을 설정
하는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속히 반영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안전성, 공공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성착취물 등을 성착취물 등과 신상정보로 확대하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과 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고려해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정보 보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를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